

의안번호	2210005
의 퇴 인	정점식 의원
회 답 일	2025. 7. 14.
추계번호	25B248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사고예방의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19조 (재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의2 (사고예방의무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9조 (재정지원)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의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 시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의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 • 현재 보험료 지원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¹⁾에 따라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음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상세 사유

□ 사고예방의무 등(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²⁾에 따라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28조³⁾에 따라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현행 교육·홍보 사업 실시 비용 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는 보험사업자가 실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보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험료의 일부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 제10조의2는 보험가입자가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사고 예방 노력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사고예방 홍보 및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2025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6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평·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15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명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⁴⁾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	대상 품목(품종/작형)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뽕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 양파, 고추, 시설투(수박)	14
2009	감자(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투(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투(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투(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투(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투(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투(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투(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투(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가을·월동), 단호박, 파(대파/쑥갓·싹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팔,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투 봄감자,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73
2025	생강, 참깨, 녹두	76
합계	76개 품목	

4)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안정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2025	감자(봄,고랭지), 벼, 가을배추, 가을무,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15
합계	15개 품목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보험 대상품목(총 30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3):**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팽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미역	전남 고흥군, 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방어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흰다리새우	충남 당진시, 아산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참고자료 2]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676,226	589,676	54.2	1,141,145	544,222	47.7%	145,285	307,424	39.7%	144,213	12.6%	168.8	21.3	263,766	1,020,784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8,222	38,631	95.4	221,593	107,414	48.5%	7,954	20,208	12.7%	86,017	38.8%	74.3	28.8	44,881	201,344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수입안정보험(구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649	3,297	3.9	9,001	4,500	50.0%	1,005	2,542	39.4%	953	10.6%	339.8	36.0	2,061	6,329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주: 수입안정보험은 25년 4월부터 판매 개시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건, 백만원)

연도	가입두 수 (천두)	가입 건수 (건)	보험 가입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 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38	726	7.2	3,191	1,596	50%				1,596	50%	83,452,243	41,726,122	27,935	2,453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90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65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92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716	13.3	2,265	1,132	50%				1,133	50%	72,932,425	36,478,559	7,783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75	35,838,838	63	7

주: 1) '25년 이전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25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 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²⁾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26	39.7	30,013	15,049	50	3,761	5,950	32	5,253	18	1,807	7,301	289	31,368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9	5,860	32	5,282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2	32	4,220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